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11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오세희 · 조계원 · 허종식
강준현 · 안태준 · 박선원
박희승 · 이병진 · 위성곤
이훈기 · 이재관 · 박용갑
윤종균 · 이연희 · 이광희
채현일 · 임호선 · 이강일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해외위해제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위해제품의 지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직접구매 해외제품</u> ”이란 <u>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u> 을 말한다. <u>제16조의2(해외위해제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최</u>

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위해제품의 지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